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119
----------	-------------

제안연월일 : 2019년 11월 29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상근조항을 수정함.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
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상근”을 “상근을 원칙으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장 총칙</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자기결정권 강화, 인권의 보호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u> 」 및 「 <u>장애인복지법</u> 」----- ----- ----- ----- ----- ----- ----- ----- ----- -----.	<u><개정안과 같음></u>
제2조(정의) 이 조례	제2조(정의) -----	<u><개정안과 같음></u>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 상담,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 교육, 주거, 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

<개정안과 같음>

2. -----

----- 사회복지, 교육, 주거, 근로 -----

-----.

<개정안과 같음>

3.、4. (생략)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6. (생략)

7.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3.、4. (현행과 같음)

5. -----

----- 법
제19조제1항 -----

-----.

6. (현행과 같음)

7. -----

----- 사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를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정신질환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모든 시민은 정신건
강증진을 위하여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
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

----- 서울특별시
(이하 "시"라 한다)-

<개정안과 같음>

제5조(지역계획의 수
립과 시행) 시장은
국가계획에 따라 특
별시(이하 "시"라 한
다) 단위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
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
은 「지역보건법」 제
7조에 따른 지역보

제5조(지역사회 통합
계획의 수립과 시행)
-- 법 제7조, 「장애
인복지법」 제10조
의2, 「지역보건
법」 제7조를 연계
하여 시 -- 지역사회
통합 -----이하 "지
역사회 통합계획"이
라 한다-----.
<후단 삭제>

<개정안과 같음>

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제6조(복지서비스 실행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정신건강증진사업

제7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② -----

--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학교 -----
--.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

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등록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및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

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
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하 “센터”라 한
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상근
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
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
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
을 위하여 적극적으
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를 직
접 운영하거나 정신
건강에 관한 전문성
이 있는 정신건강증
진시설 또는 비영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센터의 장은 상근
을 원칙으로 한다.

③~⑦
<개정안과 같음>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들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유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5. (생략)

제10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

-----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정신질환자 등-----

4. -----

----- 정신질환자 등-----

5.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지원을 위한 일시보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 비영리법
인에 -----
-----.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제11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

<개정안과 같음>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개정안과 같음>

1.、2. (생략)

3. 정신건강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

4.、5. (생략)

③ (생략)

제11조(운영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2. (현행과 같음)

3. -----
-----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4.、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3장 정신질환자
지역사회통합 사업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2.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

제13조(지역사회 안정화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의 악화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안전전화, 응급병상, 동료지원센터, 안정화 쉼터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안과 같음>

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
의 제공

<신 설>

제14조(치료환경의 개

<개정안과 같음>

선) ① 시장은 정신
질환자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
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
에서 외래치료를 받
는 정신질환자에 대
하여 치료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쇄병동
으로 운영하는 정신
의료기관을 개방병동
으로 전환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정신질환자 사

<개정안과 같음>

회통합지원) ① 시장
은 정신질환자를 대
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2.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3. 동료지원가 양성

등

4. 권익옹호

5. 평생교육

6. 문화·예술·여가·

체육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② 사회통합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

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정신질환자 가

족지원) 시장은 정신

질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이 정

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

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

<개정안과 같음>

시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회복에 관한 정보제공
2.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가족 상담 지원
4. 가족 역량강화 지원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

-----옹호-----
-----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및 시설,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및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운영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회복지、교육、주거、노동”을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법 제19조 제1항의”를 “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을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장애극복과 사회적응”을 “회복과 사회통합”으로 하

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정신질환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지역사회 통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 계획에 따라 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를 “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지역보건법」 제7조를 연계하여 시”로,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를 “이하 “지역사회 통합계획”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복지서비스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앞에 “제2장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삽입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중 “정신건강 상”을 “정신건강상”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를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통합계획의 시행계획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를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

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⑦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정신질환자등”을 각각 “정신질환자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비영리법인에게”를 “비영리법인에”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10조)제1항 중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정신건강증진시설간”을 “정신건강증진시설 간”으로 한다.

제12조 앞에 “제3장 정신질환자 지역사회통합 사업”을 삽입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지역사회 안정화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의 악화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안전전화, 응급병상, 동료지원 쉼터, 안정화 쉼터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치료환경의 개선)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외래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쇄병동으로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을 개방병동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3. 동료지원가 양성 등
4. 권익옹호
5. 평생교육
6.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회통합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정신질환자 가족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회복에 관한 정보제공
2.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가족 상담 지원
4. 가족 역량강화 지원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중전의 제14조)제1항 중 “보호”를 “옹호”로,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를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정신질환자 자조단체 및 시설,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및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운영비·사업비 등의 경비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에 대한”을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의”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6조) 중 “바는”을 “사항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정신질환자의 재활, 자기결정권 강화, 인권의 보호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 	<p>제1조(목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p> <p>-----</p> <p>-----</p> <p>-----</p> <p>-----</p> <p>-----</p> <p>-----</p> <p>제2조(정의) -----</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2. ----- <p>----- <u>사회복지·교육</u></p>

는 사회복지, 교육, 주거, 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4. (생략)

5. "정신의료기관"이란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법 제19조 제1항의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를 말한다.

6. (생략)

7. "정신재활시설"이란 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생략)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 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

, 주거, 근로 -----

-----.

3. 4. (현행과 같음)

5. -----
----- 법 제19조
제1항 -----

-----.

6. (현행과 같음)

7. -----

----- 사람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회복과 사회통

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제4조(시민의 의무) 모든 시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과 시행) 시장은 국가계획에 따라 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계획은 「지

합 -----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정신질환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

제5조(지역사회 통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 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 「지역보건법」 제7조를 연계하여 시 -- 지역사회 통합 -----이하 "지역사회 통합계획"이라 한다-----
-. 〈후단 삭제〉

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 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

제6조(복지서비스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역사회 통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정신건강증진사업

제7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

----- 정신건강상 -----
-----.

제8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자치구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 지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제8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

-----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
며, 지역사회 통합계획의 시행계
획이나 「지역보건법」 제7조제
2항 및 제8조의 -----
-----.

② -----

----- 정신질환자 자
조단체,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학
교 -----.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
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

<삭 제>

하게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등록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및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안정

〈삭 제〉

적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확충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신재활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들이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유

⑤ 제4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정신질환자 등 -----

통 등을 지원하는 시설

4.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자등을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5. (생략)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 시설 내에 정신질환자 등의 위기 지원을 위한 일시보호 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속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②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정신건강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간의 연계체

4. -----

정신질환자 등-----

5. (현행과 같음)

<삭제>

③ -----
----- 비영리법인에
-----.

제11조(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사업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
-----.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계 구축지원

4. 5. (생략)

③ (생략)

제11조(운영예산의 지원) ① 시장

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1.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4.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제3장 정신질환자 지역사회통합사업

제13조(지역사회 안정화 지원) 시

장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의 악화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내에서의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안전전화, 응급병상, 동료지원 쉼터, 안정화 쉼터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2. 정신질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 및 관련 교육의 제공

<신 설>

<신 설>

제14조(치료환경의 개선)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불필요한 입원 치료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외래 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쇄병동으로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을 개방병동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정신질환자 사회통합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2.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3. 동료지원가 양성 등
4. 권익옹호

〈신 설〉

제14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5. 평생교육

6.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회통합지원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정신질환자 가족지원) 시장은 정신질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회복과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회복에 관한 정보제공

2.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

3. 가족 상담 지원

4. 가족 역량강화 지원

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권리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단체에 대한 지원) ① ----

-옹호------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정신질환자 자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생략)

제16조(준용)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바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단체 및 시설, 정신질환자 가족단체 및 시설을 보호·육성하고-- 운영비·사업비 등의 경비를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의 -----.

제18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9조(준용) -----
사항은 -----

-----.